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상품권 발행·상환 규제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81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4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13
3. 주요내용 검토	16
가. 상품권의 정의 및 적용범위	16
나. 상품권 발행신고 의무화 및 발행 제한 등	22
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27
라. 미상환총액의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 체결 의무화 등	30
마. 상품권의 상환 및 잔액 환급 등	33
바. 장부의 작성·보존, 발행실적 보고 등	36
사.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화	38
아. 사업의 폐지 및 정지	41
※ 【참고자료】 제정안과 舊상품권법의 세부 내용 비교	4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오세회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4. 8. 26.
3. 회 부 일 : 2024. 8. 27.

II. 제안이유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1999년 舊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의 발행업체·발행방식 및 종류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음.

상품권 발행 시 발행자는 선수금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및 시기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등의 이점이 있으나, 상품권의 불법유통,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중단으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나 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이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7조).

다. 상품권 발행자가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보며,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함(안 제9조).

라.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 등 상품권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안 제13조).

사.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법률에 명시한 일정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사업, 상품권 유통질서 조성사업, 그 밖에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안 제20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 “상품권”이란 액면 가격에 상당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표로, 백화점이나 기타 상점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의 하나임.¹⁾

○ 상품권은 소비자의 구입 물품 및 시기의 선택권을 넓혀주고,²⁾ 판매 촉진 등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 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등 특정업체나 사회적 약자계층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³⁾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⁴⁾

□ 과거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은 1961년 제정된 舊상품권법에 의해 규율되었으나,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과 행정력의 한계에 따른 실효적 규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이 폐지되었음.⁵⁾

이후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누구나 인지세⁶⁾만 납부하면 상품권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발행처·사용처·사용방법 및 형태 등

1) 표준국어대사전

2) 김성천, “상품권 피해 예방·구제 위해서는 상품권 거래 규제하는 입법 필요”, 『소비자시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9, 16쪽

3) 전통시장 등 특정업체나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4) 정훈, “국내 「상품권」 시장 현황과 시사점”(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4

5) 당시 사적계약의 결과인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고, 일본 외에는 상품권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운용하는 나라가 없으며,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고, 이 법이 추구하는 소비자보호문제는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사유로 폐지되었음.(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1998.12.)

6)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음.

[상품권 분류]

구 분			내 용
사용 방법	금액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용역상품권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형태	지류형상품권		지류로 발행된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	전자형 상품권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자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舊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발행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23년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액은 12조 6,618억원⁷⁾으로, 기타 지류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포함할 경우 연간 총 상품권 발행액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산됨.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의 거래액은 2

과 세 문 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8의2. 모바일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7)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지류형 상품권은 2021년 17.3조원을 최고 기점으로 하여 점차 하락하고 있음.

019년 3조 3,800억원에서 2023년 9조 8,820억원으로 비약적으로 성장⁸⁾하고 있음.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현황]

(단위: 천장,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발행 매수	유통사	169,624	139,886	136,726	134,905	97,859	110,339
	정유사	9,982	7,947	7,158	7,325	5,037	5,725
	온누리	140,500	188,000	405,750	335,000	254,002	175,000
	지자체	42,877	106,153	357,496	371,763	289,686	143,893
	합 계	362,983	441,986	907,130	848,993	646,584	434,957
발행 금액	유통사	77,331	73,503	72,659	93,624	73,866	89,926
	정유사	3,930	3,512	2,782	3,057	2,198	2,640
	온누리	15,550	19,000	40,000	33,000	25,000	17,000
	지자체	4,039	10,963	42,386	43,304	36,676	17,052
	합 계	100,850	106,978	157,827	172,985	137,740	126,618

(자료: 한국조폐공사)

□ 상품권은 현금에 비하여 고액권의 발급이 가능하고,⁹⁾ 거래 시 배서(背書)가 의무화되는 수표¹⁰⁾와 달리 사용자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비자금 조성 및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유통에 사용될 수 있으며, 법인 등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 시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탈세 및 불법로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¹¹⁾

8) 2019년 3조 3,800억원, 2020년 4조 3,990억원, 2021년 6조 997억원, 2022년 7조 3,259억원, 2023년 9조 8,820억원 (통계청)

9) 2023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 상품권 1억 1,034만장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 상품권 비중은 50.1%이며, 50만원 이상 고액권도 476만장(4.3%)에 달함. 정유사 상품권의 경우 2023년 발행된 573만장 중 57만장(10.0%)이 10만원 이상 고액권이었음.

10) 「수표법」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①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背書)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17조(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① 배서는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移轉)한다.

□ 또한, 상품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4만 4,411건에 이르며, 이 중 실제 피해구제 건수는 1,865건으로 상담건수 대비 4.2% 수준임.

[한국소비자원의 상품권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소비자상담 ¹⁾	3,600	3,905	26,815	5,701	4,390	44,411
피해구제 ²⁾	228	299	525	388	466	1,865
상담 대비 피해구제 비율	6.3	7.7	2.0	6.8	10.6	4.2

주: 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2) 소비자상담 후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소비자원에 접수되어 법률 및 규정 검토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

(자료: 한국소비자원)

○ 특히, 최근 모바일 기기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시장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환급 불가, 잔액환급 거절 등 신유형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2019년 1,916건에서 2023년 2,97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11) 김숙희, “『상품권법 제정안』과 관련 진술의견”(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17.

[한국소비자원의 신유형상품권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소비자상담 ¹⁾	1,916	2,307	25,294	4,301	2,977	36,795
피해구제 ²⁾	174	232	432	308	395	1,541
상담 대비 피해구제 비율	9.1	10.1	1.7	7.2	13.3	4.2

주: 1)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2) 소비자상담 후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소비자원에 접수되어 법률 및 규정 검토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

3) 2021년의 경우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자료: 한국소비자원)

○ 더불어, 최근 티몬·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할인 판매한 대량의 상품권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로 인해 사용이 중지되어 상품권 구매자에게 대규모의 피해를 입히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품권 발행·상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상품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 부처가 산재(散在)되어 있어 업무 중복과 규제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품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포함한 총 10 여개의 상품권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수의 부처가 이를 소관으로 하고 있음.

[상품권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현황]

관련 법규	주요 내용	소관 부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선불카드 발행한도, 공탁 등에 관한 규율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유통 관련 규율	
인지세법	상품권 인지세 납부 대상과 금액 등	기획재정부
문화예술진흥법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에 대한 인증기준 등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머니 관련 규제,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경품으로서 상품권 사용 금지 등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기준 등	공정거래 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등 권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 등	
지류형·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상품권의 유효기간, 발행자의 최종 책임과 의무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거나,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거래 등에 관한 기준 등	중소벤처 기업부

(자료: 금융위원회)

□ 이에 제정안은 상품권을 통한 리베이트 및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 유통,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등 현재 상품권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일반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품권 시장의 성장 추세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1999년 舊상품권법 폐지 이후 제18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상품권 관련 제정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상품권 관련 법률안 제출 내역 >

구 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비 고
제18대	상품권법안	안효대의원	2009.09.29.	임기만료 폐기
제19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2015.04.23.	임기만료 폐기
제20대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2017.06.08.	임기만료 폐기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채이배의원	2017.07.25.	임기만료 폐기
	상품권법안	이학영의원	2017.11.22.	임기만료 폐기
제21대	상품권법안	이학영의원	2021.07.26.	임기만료 폐기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2021.01.06	임기만료 폐기

□ 다만, 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은 1999년 폐지된 舊상품권법과 유사한 구성과 체계
 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산업, 시장환경의 변화
 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¹²⁾

1999년 당시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중심으로 한 금액형 상품권이
 주류였고 소지자가 명시되지 않아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
 닌 유가증권이었기 때문에 분실 및 도난, 위조발행 등이 발생하
 기 쉬운 구조였으나, 현재 상품권 시장은 온라인, 모바일을 중심

12) 2021.3.,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
 원 이용준) 내용 일부 발췌

으로 상품권의 유통·구매·선물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분실 및 도난 등의 위험이 감소하였고, 금액형 외에도 물품교환형, 물품배송형, 용역형 등 다수의 유형이 제공되고 있어 舊상품권법 적용 당시의 상품권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로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임.

○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2023.9.14.)으로 지류(紙類)식 상품권 중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됨에 따라, 상품권 중 상당 부분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별도의 상품권법을 제정하는 경우 각 법률의 규제 범위의 모호성, 중복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류식 상품권 표준약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현행 규정을 통해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권 발행규제 및 공탁의무 부과 등 상품권 시장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경우 내수진작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i)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측면에서 자영업자들의 마케팅(할인), 소비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한 상거래 영역¹³⁾까지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ii) 상품권

13) 자기발행형 상품권(발행인=재화판매자)은 일종의 선수 매출금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의 성격이 강함.

발행신고, 공탁의무, 연간 발행한도 제한 등의 규제가 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 제정안은 舊상품권법의 조문 구성 및 주요내용과 유사하나, 舊상품권법 폐지 후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¹⁴⁾ 을 반영하여 일부 규정을 삭제 또는 추가하고 있으며,

舊상품권법과 달리 상품권을 자기발행형 상품권 및 제3자발행형 상품권으로 구분하지 않고(안 제2조), 미상환 상품권 수익의 서민 금융진흥원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음(안 제20조).

○ 제정안과 舊상품권법의 조문 구성 및 주요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제정안과 舊상품권법의 조문 구성 비교]

舊상품권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범위)
	제4조(상품권의 종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상품권의 발행	제5조(자기발행형 상품권의 발행자)	제2장 상품권의 발행	
	제6조(제3자발행형 상품권의 발행자)		
	제7조(상품권발행의 등록)		제5조(상품권의 발행)
	제8조(상품권발행자의 지위승계)		제6조(상품권발행자의 지위승계)
	제9조(상품권폐지의 신고등)		제7조(상품권 발행폐지의 신고 등)
	제10조(상품권의 기재사항등)		제8조(상품권의 기재사항)
	제11조(유효기간)		제9조(유효기간)
	제12조(권면금액의 제한)		제10조(상품권 발행의 제한)
	제13조(상품권 발행의 제한)		
	제14조(발행보증금의 공탁)		제11조(공탁)

14)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금융위원회 신설, 선불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도입 등

舊상품권법		제정안	
	제15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16조(금융기관등의 지급보증등) 제17조(공탁물의 반환승인)		제12조(상품권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제3장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	제18조(상품권의 상환) 제19조(우선변제의 보장) 제20조(권리실행의 신청과 재판) 제21조(재판확정후의 절차) 제22조(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액의 공탁) 제23조(환가 및 배당절차와 기간계산) 제24조(금융기관에 대한 권리실행)	제3장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등	제13조(상품권의 상환 등) 제14조(공탁물의 배당 등) 제15조(피해보상금의 지급)
제4장 보칙	제25조(상품권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6조(명의대여의 금지) 제27조(장부의 작성보존등) 제28조(발행실적등의 보고)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30조(업무개선명령) 제31조(인가·등록의 취소 및 발행의 정지) 제32조(청문) 제33조(업무의 감독) 제34조(권한의 위임)	제4장 보칙	 제16조(장부의 작성 및 보존 등) 제17조(발행실적 등의 보고)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9조(업무개선명령) 제20조(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연) 제21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22조(사업의 폐지 및 정지) 제23조(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시행령)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제25조(양벌규정) 제26조(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3조(상품권의 발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정안과 舊상품권법의 주요 차이점 비교]

항 목		(구)상품권법(폐지)	제정안
적용범위		-	「여전법」상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 전자화폐는 적용 제외
발행규제		자기발행형: 등록제 제3자발행형: 인가제 (자본금 10억원 등)	신고제
인·허가 감독 주무관청		시·도지사, 재정경제원장관* * 대통령령에서 인가 및 인가 취소 등 사항을 시·도지사에 위임	금융위원회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 1년 미만으로 설정시 유효기간 미설정으로 의제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 5년 미만으로 설정시 유효기간 5년으로 의제
상품권 발행 제한	대상 및 사유	1. 상품권 상환대상 물품·용역 제한 (사유) 소비자의 보호, 물가의 안정,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2. 연간발행한도 등 제한 (사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연간발행한도 등 제한 (사유)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유통질서의 확립 등
	권한 행사	재정경제원장관	금융위원회
공 탁	의무 비율	미상환 상품권총액의 50% 이상	동일
	예외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시	동일
	공탁물 에 대한 권리 실행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실행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실행
미상환상품 수익의 귀속		상품권발행자에게 귀속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화 ※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미상환 상품권수익 사용용도 제한 및 별도 회계처리 의무 부과

3. 주요내용 검토

가. 상품권의 정의 및 적용범위

- 제정안 제1장 총칙은 舊상품권법을 참고하여 상품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4조, 제21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상품권이용자가 상품권의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액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나. 물품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다. 용역상품권: 상품권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상품권이용자”란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기 위하여 상품권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권면금액(券面金額)”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금액상품권: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
나.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 상품권이용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발행일 현재의 가액
4. “상환”이란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승차권 등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연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의 선불카드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의 전자화폐
6.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적용의 일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자기발행형 상품권(상품권발행자에 한정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품권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2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정안은 상품권의 개념을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상품권이용자가 상품권의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를 금액상품권,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舊상품권법¹⁵⁾과 현행 “소

15) 「舊상품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비자분쟁해결기준”¹⁶⁾의 정의를 따른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舊상품권법의 적용 제외대상이었던 지역상품권, 승차권, 공연장 입장권 등(안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¹⁷⁾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¹⁸⁾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안 제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2 품목별해결기준

-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품권이 지류(紙類)형 상품권으로 발행(전환)될 경우에도 적용함.
- “신유형 상품권”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금액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점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전자형 상품권: 금액 등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 모바일 상품권: 금액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 온라인 상품권: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18)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3조제4호 및 제5호).

- 이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¹⁹⁾,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각 개별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복규제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 외에,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자기발행형 상품권 발행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발행 신고, 공탁, 피해보상계약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안 제21조), 이는 영세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라 규율되는 상품권의 범위가 유동적이어서 실제 적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2023.9.14.)되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가 포함되었으며, 이에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3.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따라 지류식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
되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됨.

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용범위
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안 제3조제5호), 지류식 상품권이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변
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정안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자기발행
형을 제외하고 있어²⁰⁾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된 상품권이라 하더
라도 자기발행형인 경우에는 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됨.

[제정안에 따라 규율되는 상품권의 범위]²¹⁾

지류식 상품권		↔	전자식 상품권 *지류식에서 전환된 것 포함	
자기발행형	제3자 발행형		자기발행형	제3자발행형 (선불전자지급수단)

- 주 1. 음영 부분이 제정안에 따른 규율 대상임.
2.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승차권, 공연입장권 등은 제외

20)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21) 자기발행형·제3자발행형을 기준으로 구분한 경우

자기발행형 상품권		제3자 발행형 상품권		
지류식	전자식	지류식	↔	전자식(선불전자지급수단) *지류식에서 전환된 것 포함

- 주 1. 음영 부분이 제정안에 따른 규율 대상임.
2.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승차권, 공연입장권 등은 제외

○ 이와 같이 상품권의 형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변경되는데, 지류식 상품권의 전자적 변환²²⁾이 비교적 쉽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품권 발행자와 이용자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리·감독상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 둘째, 제정안은 “상환”을 “상품권발행자등이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안 제2조제4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3자발행형 지류식상품권이 전자상품권으로 전환되면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율되므로, 이 경우에도 상환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공탁 대상(미상환총액)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제3자발행형 지류식 상품권이 전자상품권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동 제정안에 따른 공탁 대상이 되는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대상이 되어 이중 규제를 받게 될 우려가 있음.

□ 셋째,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이 중소기업 등 영세한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자기발행형 상품권을 발행

22) <예시>신세계상품권을 SSG페이앱에서 SSG페이로 전환, 지류식 해피머니상품권을 해피머니앱에서 해피캐시로 전환(이후 해피캐시를 네이버페이로도 전환 가능) 등. 다만, 월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일정 수수료가 부과됨. 그 외에, 전자식 상품권을 지류식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함.

하는 발행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공탁, 피해보상계약, 발행실적 보고,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연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안 제21조),

제3자발행형 상품권 발행자에 대해서도 총발행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상품권 발행신고 의무화 및 발행 제한 등

- 제정안은 상품권 발행시 자본금, 상품권의 발행예정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상품권에 권면금액, 공탁물의 배당 등을 기재하도록 하며, 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연간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조, 제10조, 제23조).

제 정 안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상호 및 주소 2. 자본금 또는 출자금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에 한정한다) 4. 발행하고자 하는 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상표 및 서식 5. 상품권의 발행예정금액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상품권발행자의 지위승계) ① 상품권발행자가 그 상품권의 발행에 관련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그 영업에 관하여 법인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승계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 발행폐지의 신고 등) ① 상품권발행자가 그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기재사항) ①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품권이라는 문자
2. 발행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발행자의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나 본사의 소재지
4. 권면금액 및 상환대상물의 내용
5. 상환장소
6. 발행연월일 및 발행번호
7. 유효기간(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발행자의 기명날인
9. 발행신고 사실(제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한정한다)
10. 제14조에 따른 공탁물의 배당 또는 제15조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금액상품권에는 금액을, 물품상품권에는 물품의 품질·규격·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그 가액을, 용역상품권에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그 가액을 기재하여 상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상품권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 같은 항 제5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을 상품권 외의 별지 사용안내서에 기재하여 상품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권면의 기재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상품권 발행의 제한) ① 누구든지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2.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이미 신고한 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품권이용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상품권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최고한도(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되는 상품권의 경우 충전잔액을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舊상품권법은 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제정안은 변화된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권면금액 최고한도, 연간발행한도 등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여 상품권 시장의 자유로운 발행·유통을 촉진하면서도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되며,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상품권 권면금액 최고한도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상품권의 경우 고액권 발행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품권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어 고액상품권은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 등의 범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액상품권이 다량으로 유통될 경우 국내 통화량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舊상품권법의 입법례에 따라 상품권 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설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액면가별 현황]

(단위: 천장)

구 분	액면금액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유통사	2,000	-	-	-	-	-	-
	5,000	23,381	13,301	14,076	8,369	5,847	5,325
	10,000	72,479	57,952	55,235	39,533	22,990	25,273
	30,000	1,398	669	467	504	244	311
	50,000	22,755	20,034	22,529	26,173	23,511	24,129
	70,000	-	40	10	-	-	-
	100,000	47,706	45,884	41,568	56,253	41,636	50,224
	300,000	272	232	376	302	173	317
	500,000	1,633	1,774	2,465	3,771	3,458	4,760
	소 계	169,624	139,886	136,726	134,905	97,859	110,339
정유사	5,000	200	-	50	-	50	-
	10,000	4,452	3,211	3,007	2,508	1,510	1,264
	50,000	3,711	3,090	3,244	4,022	2,865	3,894
	100,000	1,619	1,646	857	795	612	567
	소 계	9,982	7,947	7,158	7,325	5,037	5,725
온누리	5,000	6,000	20,000	11,500	10,000	8,004	10,000
	10,000	125,500	162,000	394,250	325,000	245,998	165,000
	30,000	9,000	6,000	-	-	-	-
	소 계	140,500	188,000	405,750	335,000	254,002	175,000
합 계		320,106	335,833	549,634	477,230	356,898	291,064

(자료: 한국조폐공사)

○ 참고로, 제정안은 지류식 상품권에 대해 권면금액 최고한도를 규율하는 것과 같이,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되는 상품권(이하 ‘전자상품권’)의 충전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자발행형 전자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제정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²³⁾(안 제3조제5호)되므로, 제정안의 시행령에서는 자기발행형 전자상품권에 대해서만 충전잔액을 별도로 정하게 됨.

□ 둘째,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상품권 발행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연간발행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 환급 불가, 잔액 환불 거절 등의 문제로부터 상품권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임.

□ 셋째, 제정안은 상품권의 발행·폐지의 신고, 상품권의 연간 발행한도의 제한 등 **상품권의 관리·감독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있는데,

○ 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의 발행·폐지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공탁 의무이행 여부 파악, 부실기업의 상품권 발행 중단조치 등을 위해서는 상품권 발행사의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23) 제3자발행형 전자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임.(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참고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보유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원회가 단독 주무관청으로서 상품권 시장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⁴⁾

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 제정안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소 5년으로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권 가액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상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유효기간) ① 상품권발행자가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u>5년</u>으로 본다. 다만,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상품권의 발행일로부터 <u>5년</u>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명시된 대로 현금·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

24) 참고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품권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원칙적으로 감독 주무관청을 본사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 하되, ① 외부감사대상 기업,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발행업자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도록 이원화하였음.

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²⁵⁾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²⁶⁾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²⁷⁾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물품·용역상품권의 경우 지나치게 장기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용역의 가격변동 등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길수록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사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있는 바, 상품권의 최소 유효기간을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5)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o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 (9천원×90%)}

27)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은 5년 이하 가능

○ 참고로,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지류식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유형상품권에 대해서만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규정²⁸⁾하되, 지류식·전자식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둘째, 제정안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이 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권면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금액 상품권의 최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은 유효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를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제정안과 같이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비율이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상 환불비율인 90% 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어 오히려 상품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상품권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환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28)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3호)

제5조(유효기간) ② 발행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1. 가공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농·임·수축산물로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패·변질 등으로 본래의 품질유지가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2.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이하 생략)

라. 미상환총액의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 체결 의무화 등

- 제정안은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총액(미상환총액)의 50% 이상을 공탁하도록 하고, 미상환총액에 대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탁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 정 안
제11조(공탁) ①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그가 발행한 상품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총액(이하 “미상환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품권발행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품권 발행 전에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상품권발행자의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시점에서의 공탁금이 미상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로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탁은 상품권발행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하여야 하고,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⑥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공탁금 총액이 미상환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⑦ 공탁물의 종류, 공탁의 시기, 공탁물의 반환, 그밖에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상품권이용자 피해보상계약) ① 상품권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제 정 안

(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피해보상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②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액이 제11조에 따라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품권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탁물의 배당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가 미상환 상품권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가 공탁한 공탁물을 출급하여 미상환 상품권의 소지자(이하 “미상환채권자”라 한다)에게 배당을 실행할 자(이하 “권리실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미상환채권자는 권리실행자에게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신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④ 권리실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기간·방법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권리실행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제3항에 따라 신고된 금액의 합계액과 소요비용을 합산한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다.
- ⑥ 권리실행자는 출급한 공탁물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 ⑦ 제11조에 따라 공탁을 한 상품권발행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배당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제15조(피해보상금의 지급) 제12조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舊상품권법은 상품권발행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상품권이용자가 이미 결제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지급보증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상환을 담보하도록 한 바 있음.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29), 「전자금융거래법」 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31) 등에서도 공탁,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음.

□ 제정안도 상품권발행자가 미상환총액의 50%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상환총액에 대한 피해보

2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공탁)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0)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이하 생략)

3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탁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권이용자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³²⁾하려는 취지임.

- 다만, 제정안은 상품권발행자의 과거 실적이나 신용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일률적 공탁은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상품권의 재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피해 등 발행자와 무관한 피해는 구제하지는 못한다는 의견,³³⁾ 상품권 발행을 통한 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킴에 따라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³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탁 규모 및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공탁 규모 조정 필요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⁵⁾

마. 상품권의 상환 및 잔액 환급 등

- 제정안은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 환급을 의무화하고, 금액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에게는 사용잔액의 현금 환급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3조).

32) 舊상품권법에서는 미상환총액의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해당 규정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음. 부산의 대형백화점인 스파교평((주)동천)이 1994년 7월 23일 부도처리 되었으나 당시 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험이 해당 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삼풍백화점이 부도처리 되었을 때도 당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이 약 5억 2,700만원 가량의 미상환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하였음.(김숙희, “『상품권법 제정안』과 관련 진술의견”(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17.)

33) 김대중,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발제문”(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17.

34) 문승일 교수, “상품권 관련 공청회 진술의견”(국회정무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2017.

35) 참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의 공탁 상한은 선불카드 발행 총액의 10%임.

제 정 안

제13조(상품권의 상환 등) ①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에게 현금 환급에 우선하여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상품권이용자가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금액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이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발행자등은 상품권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등을 거절하거나 상품권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 舊상품권법에서는 상품권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품·용역상품권에 대한 현금상환 및 잔액환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지류형상품권 표준약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물품·용역상품권에 대한 현금상환 의무³⁶⁾ 및 상품권 잔액환급³⁷⁾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 권리를

36) 지류형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2호)

제5조(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①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3호)

제7조(환불) ③유효기간 경과 전, 특정 물품 등의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경우, 신유형 상품권 상의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등은 해당 신유형 상품권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o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 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 역의 상환의무이행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 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 당하는 금액 반환 {예: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 구 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 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원×90%)}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지류형상품권 표준약관」 등의 경우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상품권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제정안은 법률에 상품권발행자의 현금상환 의무와 잔액환급 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 제13조제1항은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의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물품상품권”에 기재되는 권면금액은 상품권이용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의 발행일 현재 가액이나,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할인판매가 일반화되어 있어 상품권 환불 시 물품상품권 발행자가 권면금액을 환급하도록 할 경우 판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물품상품권 및 용

37) 지류형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2호)

제8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②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 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3호)

제7조(환불) ② 유효기간 경과 전,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신유형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역상품권의 경우 환급액을 금액상품권과 달리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 상품권에 권면금액이 아닌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을 표시하도록 하고, 환불 시에도 구매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⁸⁾

바. 장부의 작성·보존, 발행실적 보고 등

- 제정안은 상품권발행자로 하여금 상품권 발행업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존하고, 분기별 발행실적 및 미상환총액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상품권 발행 및 상환실태를 검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9조).

제 정 안
제16조(장부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상품권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무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 발행신고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3호)

제4조(발행 등)①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한다.

※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2.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제7조(환불) ④ 유효기간 경과 전, 특정 물품 등의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등(제2호의 경우에는 발행자)은 해당 신유형 상품권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상품권 상의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천재지변 또는 상품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2. 발행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신유형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정 안

제17조(발행실적 등의 보고) ①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및 분기만료일 현재의 미상환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발행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영업소를 출입하게 하여 상품권의 발행 또는 상환실태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사적 계약인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정부가 개입·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로 舊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 시장의 실제 발행규모와 유통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제정안은 상품권발행자로 하여금 상품권 발행업무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존하고, 분기별 발행실적 및 미상환총액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상품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총량적으로 파악하고 그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미상환총액의 경우 제정안 제11조에 따른 공탁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점에서 주기적인 규모 파악이 필요함.

-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금융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상품권의 발행 또는 상환실태 등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품권의 발행 규모 및 발행자 수에 대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상품권 시장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사.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화

- 제정안은 미상환 상품권 수익(이하 ‘낙전수입’)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의무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출연된 수익을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 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0조, 부칙 제4조).

제 정 안
제20조(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연) ① 상품권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상품권 가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환하기로 명시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상환상품권수익”이라 한다)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서민금융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출연받은 미상환상품권수익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 2. 상품권 유통질서 조성 3. 그밖에 상품권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의 시행 ③ 서민금융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출연받은 미상환상품권수익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액의 산정 기준, 출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부 칙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상품권발행자가 출연한 미상환상품권수익의 관리 및 운용

□ 낙전수입(落錢收入)이란 발행된 상품권 일부가 회수되지 않고 사장되면서 발생하는 상품권 소멸시효 경과이익을 의미하며, 현재 낙전수입의 귀속 여부에 대한 법적 규율이 없는 바, 상품권의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나 상품권의 훼손 등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5년)까지 상환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 낙전수입은 상품권발행자의 수익으로 처리되고 있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이후 소멸시효(5년) 완성에 따른 총 낙전수입은 2017년 1,558억원, 2018년 2,07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³⁹⁾

[상품권의 낙전 추정액(2009~2013년 발행분)]

(단위: 백만원)

상품권 발행시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행액	3,378,312	3,829,852	4,778,540	6,219,564	8,279,590
낙전 발생시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낙전 추정액	84,638	95,950	119,718	155,821	207,431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내 상품권 시장의 낙전규모 실태조사 보고서”, 2014.

□ 제정안은 미상환 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재원을 상품권이용자의 피해보상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낙전수입이 상품권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내용별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상환상품권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입법례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봄.

○ 참고로, 출연 의무화와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⁴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의 기부금관리재단 기부⁴¹⁾의 경우에는 출연 또는 기부를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둘째, 제정안은 모든 상품권발행자를 출연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⁴²⁾에 따른 외부감

4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금융회사는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4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4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사를 받지 않는 발행기업의 경우 낙전수입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출연대상 상품권발행인의 적정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³⁾

아. 사업의 폐지 및 정지

- 제정안은 상품권발행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품권 사업의 폐지 또는 3년 범위에서 상품권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

제 정 안
제22조(사업의 폐지 및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상품권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업의 폐지 또는 3년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발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상환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비치·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보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43) 참고로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상품권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출연의무 대상을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

9.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제출·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 정당한 이유 없이 제19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 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제22조에서 사업의 폐지 및 정지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상품권의 기재사항(안 제8조) 위반과 상품권의 권면금액 최고한도 위반(안 제10조제2항), 공탁의무 위반(안 제11조), 상품권의 상환의무 위반(안 제13조) 등 위법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품권의 발행 정지와 상품권 사업의 폐지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유사 입법례⁴⁴⁾와 같이 상품권이 발행 정지와 상품권 사업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2.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폐지 사유를 구분하고 위법성이 낮은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먼저 상품권 발행을 금지하되, 영업정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 폐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임.

- 또한, 다른 금융관련 법률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⁴⁵⁾ 제정안에서는 3년 이하의 발행 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유사입법례의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2의4.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45) 대부업법(1년), 여신전문금융업법(6개월), 은행법(6개월), 상호저축은행법(6개월), 신탁법(6개월)

【참고자료】 제정안과 舊상품권법의 세부 내용 비교

구 분		舊상품권법	제정안
정의		① 상품권(금액, 물품, 용역) ② 자기발행형 상품권 ③ 제3자발행형 상품권 ④ 권면금액 ⑤ 상환	① 상품권(금액, 물품, 용역) ② 상품권이용자 ③ 권면금액 ④ 상환
적용제외		① 국가·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것 ② 승차권등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③ 공연장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등 ④ 기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① 국가·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② 승차권등 예매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③ 공연장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 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⑥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그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
감독		• 시·도지사: 자기발행형 발행 등록, 폐지 신고(자기발행형, 제3자발행형), 자기발행형 발행자 지위 승계 신고, 보고·검사, 업무개선명령 등 • 재정경제원장관: 제3자발행형 발행 인가, 발행 제한(자기발행형, 제3자발행형), 제3자발행형 발행자 지위 승계 승인 등(권한 일부 시·도지사 위임 가능)	금융위원회 (권한 일부 시·도지사 위임 가능)
상품권 발행	자기발행형 (등록제)	성명·상호·주소 종류·권면금액·서식 발행예정금액	신고제 성명·상호·주소 자본금 또는 출자금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종류·권면금액·상표·서식 발행예정금액
	제3자발행형 (인가제)	상호·주소 자본금 또는 출자금 임원 성명·주소	
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제	신고제
유효기간	기재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년 미만 설정 시 유효기간 미설정 의제) ※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유효기간 달리 설정 가능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설정 시 5년으로 의제) ※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 미만 설정 가능
	미기재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적용)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경과시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미완성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현금·물품·용역 상환·제공 명시	발행일로부터 5년 미경과 시 권면금액 90% 이내 현금·물품·용역 상환 명시

구 분		舊상품권법	제정안
상품권 발행 제한	일반 제한	① 물품 및 용역등 제한: 소비자 보호, 물가 안정,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② 연간발행한도등 제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상품권발행 등록 거부 사유) ③ 이 법에 의한 벌금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후 3년 미경과 ④ 인가 또는 등록 취소처분 후 3년 미경과 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내용·방법으로 상품권 발행 ⑥ 이미 등록된 상호와 유사한 상호 사용 등 소비자 혼란 우려	① 연간발행한도등 제한: 상품권이용자 보호,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내용·방법으로 상품권 발행 ③ 이미 신고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 등 상품권이용자 혼란 우려
	권면 금액	최고한도 대통령령 위임	최고한도 대통령령 위임
공탁	금액	① 분기 말 미상환 잔액의 50% 이상 ② 발행 전 신용상태 참작하여 필요 시 발행예정금액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시·도지사 命) ③ 미상환총액-공탁금액총액 (발행자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상품권 소지자 권익보호가 필요한 경우)	① 분기 말 미상환총액의 50% 이상 ② 발행 전 신용상태 고려하여 필요 시 발행예정금액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금융위 命) ③ 미상환총액-공탁금 (발행자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상품권이용자 권익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할	상품권발행자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 소재지	상품권발행자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신고	공탁·보증계약 후 시·도지사 신고	공탁·피해보상계약 후 금융위원회 신고
	반환	공탁금액총액이 상품권미상환액총액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물 반환 (시·도지사 승인)	공탁금 총액이 미상환액총액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 반환 (금융위 승인)
	대납	유가증권으로 대납 가능	-
	예외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시	상품권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권리 실행	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 → 재판 확정 후 상품권소지자 채권신청 → 법원 배당표 작성 및 배당 실시 ※ 보증계약 시 금융기관에 청구하여 권리실행	금융위는 권리실행자 지정·공고 → 권리실행자는 금융위 승인 받아 공탁물 출급 → 권리실행자에게 신고한 미상환채권자에게 배당 ※ 피해보상계약 시 피해보상금 지급

구 분		舊상품권법	제정안
상품권 상환	물품· 용역 상품권	기재된 물품·용역 제공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소지자가 현금 상환 요구 시 응할 의무	기재된 물품·용역 제공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이용자가 현금 환급 요구 시 응할 의무
	금액 상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물품·용역을 제공받고 잔액 환급 요구 시 응할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물품·용역을 제공받고 잔액 현금 환급 요구 시 응할 의무
	차별 금지	-	상품권 거래에 대한 차별 금지
미상환 상품권수익 귀속		- (상품권발행자에게 귀속)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 금액: 미상환상품권수익(권면금액-유효 기간 경과 시 상환하기로 명시한 가액) • 용도: ① 피해보상, ② 유통질서 조성, ③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벌칙	벌칙	① 2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상품권가액 3배 이하 벌금) ② 1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③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500만원 이하 벌금 ⑤ 100만원 이하 벌금(상환·환급의무액이 100만원 초과시 10배 이하)	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②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
	과태료	①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② 50만원 이하 과태료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융위원회 부과·징수
기타		하도급대금 또는 임금으로 상품권 지급 금지	하도급대금 또는 임금으로 상품권 지급 금지
		제3자발행형 상품권발행자의 명의대여 금지	-
		장부 및 서류 작성·비치·보존	장부 및 서류 작성·비치·보존
		시·도지사에게 발행실적등 보고 제3자발행형, 일정 규모 이상 자기발행형 상품권 발행자는 공인회계사 검사 필요	금융위에 발행실적등 보고

문 의 처

02)6788-5104